

違法建築物 團束強化에 따른 建築關係官會議

건설부는 6월21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건축관계관을 소집한 가운데 위법건축물 단속강화에 따른 건축관계회의를 개최 하였다. 본협회에서는 李宗燁 이사 (法制委員會 委員長) 가 동회의에 참석,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설부의 향후 대책을 들었다. 회의에 앞서 崔同燮 장관의 훈시가 있었는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건축자재와 기술수준의 발전노력을 통해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물의 質 향상에 기여할 것.
- 주택보급율 확대에 적극 노력 함으로써 5년내에 2백만호의 주택건설 실천.
- 질 높은 건축행정의 유도와, 제도개선을 통한 불합리점 개선으로 건축행정의 합리화 강구.
- 특히 위법건축물은 국가기강확립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응징하되 양대 선거를 틀탄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경계 위법조치하고 나환자촌 주변, 개발제한구역, 그 밖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근절할 것.
- 건축행정의 잔존비리 척결을 위해 건축행정기관 내부에 부정·비리가 있는지 반성하고 건축행정 종사자(약5천명)의 단합으로 부정·비리를 방지하며, 연간 약11만동이라는 많은 건축허가건수에 대해 능률적으로 행정을 유도할 것.
-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달린 위법건축물 단속지침은 다음과 같다.

違法建築物 團束指針

시달 : 시도지사
근거 : 건축30420 - 9513(88. 5. 20)

1. 目的

근래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일반의 준법정신 해이 및 행정당국의 단속소홀의 결과, 증가 추세에 있는 無許可建築物 및 違法建築物과 無斷用途變更을 근절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·시행 함으로써 건축행정질서를 확보하고자 함.

2. 基本方向

- 가. 기시달공문 건축455 - 15018 ('83. 7. 20) 과 건축 455 - 23296 ('83. 12. 1) 및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
- 나. 無許可 및 違法施工建築物은 적발즉시 선철거 후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철거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철저히 징수하고, 철거한다.
- 다. 無斷用途變更은 적발즉시 시정지시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, 원상복구 조치도록 한다.
- 라.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의 원인 해위자인 建築主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처벌하고 아울러 본 지침시행에 따른 단속을 소홀히 한 關係公務員은 엄중문책한다.
- 마. 위법건축물의 발생후 고발및 철거등은 사후단속을 지양하고 주민계도 활동강화로 事前豫防에 역점을 둔다.
- 바. 시장·군수는 본지침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와 인원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.
- *음성 나환자 定着村의 경우에는 기지시한 건축 30420 - 9288 ('88. 5. 18) 의 지침에 따른다(자발적 철거 촉구하여 시정조치).

3. 團束對象

- '82. 1. 1 이후 (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) 에 발생한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.
- 가. 無許可 建築物
 -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
 - 나. 違法施工 建築物
 - 건축선 위반
 - 용도지역, 지구의 건축제한 위반
 - 건폐율, 용적율, 높이 제한 등 위반
 - 대지안의 공지, 도로등의 위반
 - 기타 기준 및 관계법령 등 위반
 - 다. 無斷用途變更 建築物
 - 건축법 제 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

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

4. 細部推進計劃

- 가. 團束體系의 再確立
 - 1) 적발자 : 동장, 읍, 면장, 과출소장
 - 2) 재발방지 및 철거책임 : 시장, 군수 (구청장), 경찰서장
 - 3) 확인 감독책임 : 시·도지사
- 나. 團束班의 編成運營 強化
 - 1) 중앙합동점검반 편성운영
 - 구성 : 건설부, 내무부 관계자
 - 점검회수 증가 : 년 1회 → 반기 1회
 - 2) 시·도 합동 단속반의 편성 운영
 - 합동 단속반 체계 확립
 - 단속반원별 담당구역제 실시
 - 지역지도자(이, 통장) 와 단속반원 합동단속
 - 3) 시·군 확인 점검반 편성운영
 - 위반 건축행위 점검 기본지침(건축 455 - 15018호, '83. 7. 20)에 의한 시·도·군의 상설점검 단속반에 의함.
 - 인원보강 및 전담요원 정예화
 - 점검결과 보고 : 분기말
- 다. 特別 實態調查 實施
 - 1) 시장·군수 자체조사 실시
 - 조사기간 : '88. 5. 20 - 6. 15
 - 조사내용 :
 -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
 -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
 - 조사대상 :
 -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 : 전수조사
 - 무단용도변경
 - 대상 : 특별시, 직할시 : 660m² 이상
기 타 : 330m² 이상
 - 내용 : 판매시설, 위락시설, 근린생활시설, 공장등(주차장 포함)
 - 결과보고 : '88. 6. 10 - 6. 20
 - 2) 중앙부처 합동점검
 - 조사기간 : '88. 6. 27 - 7. 5 (기 완료)
 - 조사기관 : 건설부, 내무부 등 관계부처
 - 조사내용 : 1차 현지조사 결과 및

▲ 建築關係官會議 참석자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부: 서병기 주택국장, 이필원 건축과장 • 서울특별시: 김창배 건축지도과장, 양갑 주택개량과장 • 부산직할시: 김성일 건축과장 • 대구직할시: 김영창 건축과장 • 인천직할시: 송명길 건축과장 • 광주직할시: 이춘식 건축과장 • 경기도 황규경: 주택과장 • 강원도 방종구: 주택과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청북도 신현수: 주택과장 • 충청남도: 김현두 // • 전라북도: 양규장 // • 전라남도: 조향원 // • 경상북도: 배성렬 // • 경상남도: 이종범 // • 제주도: 김학욱 // • 대한건축사협회: 이종엽 이사 |
|---|--|

조치내용 확인

* 참고: 부진한 시 관련자는 문책 예정

3)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

○ 원상복구지시 및 고발조치

-기간: '88. 6. 16 - 6. 30

○ 무허가건축물등 철거

-기간: '88. 7 이후

라. 對國民 啓導 및 弘報強化 (시장, 군수)

○ T.V. 신문 등 언론매체 이용 ('88. 5)

○ 반상회 활용 ('88. 6.)

○ 건축사 교육 ('88. 5. 16 - 6. 16)

* 시장, 군수는 주민계도 지침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.

마. 團東方法의 効率性 提高

1)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지역 확대

○ 특별시, 직할시: 기실시(미실시한 시장은 즉시 실시)

○ 인구 30만 이상의 시: '89. 부터 실시

○ 인구 10만 이상의 시: '90. 부터 실시

2) 단속장비 보강(차량, 오토바이 등)

3) 단속기구 보강

○ 단속기구(조직, 인원) 보강: 市급이상→건축과 설치토록 적재개정

바. 기타

1) 건축사협회의 지도기능 활용

○ 건축상담실 설치운영(각지부에 설치)

○ 건축사 정신교육 실시
(위법건축물 발생방지)

5. 摘發 및 團束要領

가. 摘發方法

1) 반원별 책임구역제 실시

2) 순찰강화(자전거, 오토바이, 순찰차 활용): 종전 주 1회→주 2회

3)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: 분기 1회 이상

나. 撤去 및 告發方法

1)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은 적발즉시 사직당국에 고발

2) 적발즉시 철거(가급적 자진철거 촉구) 원칙

○ 시공중인 건축물: 무제고철거

(건축법 제53조의 3 활용
제고절차 생략)

○ 완공된 건축물: 계고후 철거

(행정대집행법 제 3조에 의한 계고)

1) 상습 무허가건축 및 위법건축과 무단용도변경 행위자 명단 작성비치
(對外秘)

2) 범법자 법정최고형 구형토록 요청
○ 무허가 건축물

7. 기타 行政事項

각 시, 도는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재발방지를 위해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행.

6. 違反者等 關係者의 處罰方法

가. 단속태만으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

발생할 경우 관계공무원 업종문책

나. 범법자 제재강화

○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벌

대상	적용 법 규	별 칙 내 용
건축주	건축법 제 54조	3년이하의 징역,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축법 제 55조	2년이하의 징역,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위법시공 건축물의 벌칙

대상	적용 법 규	별 칙 내 용
건축주	건축법 제 55조	2년이하의 징역,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축법 제 56조	200만원 이하의 벌금
설계자	건축법 제 55조	2년이하의 징역,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축법 제 56조	200만원 이하의 벌금
감리자	건축법 제 55조	2년이하의 징역,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축법 제 56조	2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축사법 제 28조	등록취소 및 업무정지
시공자	건축법 제 55조	2년이하의 징역,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축법 제 56조	200만원 이하의 벌금
	건설업법 제 52조	1년이내의 영업정지, 면허취소 등
	건설업법 제 59조	5년이하의 징역,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과태료 부과내용(최고액 부과)

대상	적용 법 규	별 칙 내 용
건축사	건축법 제 56조의 2 제 1항	-面積違反 위반면적 × 지방세법에 의한 단위 면적당 과세시가 표준액(금액이하)
	건축법 제 56조의 2 제 2항	-기타위반 위반내용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~ 100분의 1 (금액이하)

7月부터 달라지는 法令 · 制度

1. 西海岸 開發推進委員會 發족

- 시기 : 7월
- 구성 : 위원장 국무총리, 관계국무위원 전문가 등 20인 이내.
- 기능 : 서해안개발계획수립 · 조정 투자 우선 순위 결정

2. 골프장 建設許可 節次 簡素化

- 시기 : 7月 중순
- 내용 : 도시계획구역내설치, 건설부장관 도시계획구역외설치 승인 → 시도 지사에게 위임
※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

3. 韓國水資源公社 發족

- 시기 : 6. 27
- 내용 :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한국수자원 공사로 발족개편 되면서 다목적댐 건설 · 용수관리 업무만 관장하고, 공업단지 조성, 신도시건설 기능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이관.

4. 地價公示에 관한 法律制定

- 시기 : 9月 정기국회 상정 89년부터 시행
- 내용 : 내무부(課標) 국세청(기준시가)

감정원(담보물감정) 건설부 (기준시가)로 4등분 되어 있는 지가체계 일원화.

5. 建設技術管理制度 개선 (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)

- 시기 : 9월초
- 내용 : ①신기술개발자에게 개발비용의 5%이내의 기술 사용료 징수
②시공감리 실시 의무화
(3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
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)

6. 住宅建設促進法 시행령 개정

- 시기 : 6. 16
- 내용 : ①주택건설등록업체에 시공권 부여
②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불량주택 재건축 허용

7. 共同住宅 管理令 개정

- 시기 : 11월초 시행 : 89년초
- 내용 : 공동주택에 관리사 채용 의무화

8. 联立住宅 建築基準 強化

- 시기 : 6. 18

○ 내용 : ①대지의 경사도 15도 이하 지역
②산사태 · 지반붕괴 등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
③도로 · 상하수도 ·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등

※ 종전에는 시장 · 군수가 녹지보전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· 공고한 지역에만 건축가능.

9. 오피스텔 建築基準 強化

- 시기 : 6. 18
- 내용 : ①각 사무실 전용면적중 업무부분 70% 이상 확보
②온수 · 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금지
③각 사무실 욕실 설치 금지

10. 建設工事 都給限度額 책정

- 시기 : 7. 1
- 내용 : 각 건설업체별 공사 도급한도액 책정

11. 平和의 댐 建設 汎國民 推進委員會 해산

- 시기 : 6월 30일
- 모금현황 : 총액 717억원
기사용 517억원
잔액 146억원
※ 잔액은 건설부가 관리 공사비로 충당

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!!!

침투성 방수제 / MURANSE

무란새

포루마
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
(주)동방포루마 269-1718
276-0123-4

地價公示에 관한 法律案 立法豫告

○ 정부는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등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평가기준과 평가자격을 규정하는 「지가공시에 관한 법률」을 국민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88. 6. 8 입법예고 하였다.

입법배경

- 정부의 각부처별로 조사·평가하던 지가체계로 인하여
 - 동일토지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지가가 평가기관별로 상이하여 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었고,
 - 다원화된 지가체계로 조세제도·계발이익환수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것임.
 - 특히 과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시가보다 크게 낮고 지역별·지목간에도 불균형하여 왔음.
 - 따라서 정부는 이와같이 다원화된 지가를 건설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아울러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2원화되었던 자격제도도 부동산평가사로 일원화하고자 「지가공시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 - 이법의 제정으로 조세제도, 개발이익환수제도등 토지제도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, 또한 과거 2원화된 체계하에서 견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부동산평가업계도 새로운 공신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추진경위

- 지가체계 일원화는 과거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이후, 정부부처 및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오지 못하였으나,
-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등을 통한 관계부처간의 꾸준한 협의등으로 지가체계와 자격제도에 관한 일원화 합의가 이루어지고,
-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이와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은 지가체계를 정비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.

	근 거 법	용 도	평 가 자
• 기준지가(건설부)	국토이용관리법	수용보상평가기준	토지평가사
• 과세시가표준액(내무부)	지방세법	재산세등 부과기준	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시·군 공무원
• 기준식가(국세청)	소득세법	양도소득세 등 부과기준	세무공무원
• 토지감정식가(재무부)	감정·평가에 관한 법률	금융기관의 담보 평가기준	한국감정원

▲ 정부의 地價體系

주요내용

-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
- 건설부장관이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(표준지)를 선정한 후 토지가격을 조사·평가하고,
- 공시지가의 객관성·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되는 “토지평가위원회”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공시할 계획임.
- 공시지가의 효력은
- 국민의 토지거래시에 지표가 되고,
- 부동산평가업자등 전문평가인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,
- 국가·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세의 부과, 수용보상 등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.
-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한

부동산평가사의 자격제도는

-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를 포함한 「부동산평가사」자격을 부여하며,
- 토지등을 평가하는 부동산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부동산평가업자로 등록하거나 평가법인 설립인기를 받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.
- 동법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지가고시와 토지평가사 관련조항은 삭제되고,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나, 이미 공인감정사나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새로운 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보유하도록

경과규정을 두고 있음.

- 또한 「부동산평가사」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등의 평가를 위하여 「부동산평가준칙」을 건설부장관이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정부는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, 공시지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,

- 공시지가에 관한 조사·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지역 여건과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150만필지의 표준지 선정작업을 88년 하반에 완료하는 한편,
- 표준지와 과세대상토지등 각각의 개별토지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, 한국토지개발공사, 토지평가사 등으로 연구작업단을 구성하여 88. 4 연구사업에 착수하여 88. 12말에 원료할 예정에 있음.
- 이와같은 작업이 완료되고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89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평가과세와 수용보상등이 이루어져 토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임.

◎ 현행 地價體系의 예 (단위: 천원, 평)

-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44-1(代)의 경우
기준지가(86. 2. 20) : 1,697 (100. 0)
과세표준율(87. 1. 1) : 309 (18. 2)
기준식가(87. 1. 1) : 1,110 (65. 4)
감정식가(87. 1. 1) : 1,697 (100. 0)
- 대전시 서구 갈마동 208-3(田)의 경우
기준지가 : 648 (100. 0)
과세표준율 : 32 (4. 9)
기준식가 : 263 (40. 6)
감정식가 : 897 (138. 7)